

LIMAC 지침변경

2018. 12.

사회적·재무적 할인율 변경 및 KTDB 적용 가이드라인

2018. 12

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
1. 사회적·재무적 할인율 변경

- 2018년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체위원회(2018.11)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회적·재무적 할인율을 당초 5.5%에서 4.5%로 변경함

1) 변경내용

- 할인율 하향 조정 배경
- 사회적·재무적 할인율은 단계적 인하 추세
 - 사회적 할인율은 거시 사회·경제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
 - 「국가재정법」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¹⁾(‘17.09.08)을 통해서 사회적·재무적 할인율도 하향 조정됨
 - 「국가재정법」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1999년 7.5%로 제시했고, 2004년 이후 6.5%, 2008년 이후 5.5%, 2017년 이후 4.5%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
 - 재무적 할인율은 2000년 도로부문 9.5%, 철도 및 항만은 10%를 적용했고, 2004년에는 6%, 2008년에는 5.5%, 2017년에는 4.5%로 단계적으로 인하함
-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(재)조사의 사회적·재무적 할인율 변경
-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 : 5.5% → 4.5% (△1.0%p)
 - 재무적 할인율 하향 조정 : 5.5% → 4.5% (△1.0%p)

2) 적용시기

- 시 행 : 2018년 3차부터 적용

1)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, 「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」, 2017. 09. 08

1. 교통분석자료

□ 2018년 배포 자료(2017년 기준)

- 수송 및 교통분야의 교통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하는 자료 중 「지방재정법」 타당성조사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함
- 교통분석자료(O/D 및 Network자료)는 2016년 전국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, 2017년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전체 KTDB를 갱신한 전수화 자료(2018년 배포)를 적용

2. 적용시기

- 시 행 : 2018년 3차부터 적용